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직원 수사개시 통보 대상 사건 확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013호)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015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개정안의 검토	12

I. 제안경위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대응조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지방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상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행위, 스토킹 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도덕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공단(이하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종료 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사건에 현행 직무 관련 사건 외에 성관련 비위 사건, 스토킹 범죄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의2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조의2)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1. 감사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사건에-----.</u>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1)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현행	개정안
	<u>한 특례법」 제2조²⁾에 따른 성폭력범죄</u> <u>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³⁾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u> 3.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⁴⁾에 따른 스톱킹범죄와 관련된 사건</u> 4.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⁵⁾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u> 5. <u>「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⁶⁾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u>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1. <u>감사원</u> 2. <u>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u> 3. <u>행정안전부장관</u> 4.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u> ----- -----. 1. <u>직무와 관련된 사건</u>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u> 가. <u>「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u>

현행	개정안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

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

- 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

- 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

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예고입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 개정안의 검토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수사를 개시·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조사·수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통보 대상이 되는 사건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성관련 비위 사건, 스토킹 범죄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개시·종료 통보 의무는 다음 표와 같이 국가·지방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⁷⁾에 규정되어 있음.

7)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구체적으로, ① 국가·지방공무원은 대상 사건의 제한 없이 모든 사건에 대한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② 국가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사건, 성 관련 비위사건(성매매,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개시·통보 의무 규정 비교]

구분		대상사건
공무원	국가공무원	제한 없음 (모든 사건)
	지방공무원	
국가공공기관 임직원		- 직무 관련 사건 - 성 관련 비위사건: 성매매, 성폭력범죄 -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 (현행) 직무 관련 사건 - (개정안 추가) 성 관련 비위사건: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 (개정안 추가) 스토킹 범죄사건 - (개정안 추가) 마약류 관련 비위사건 - (개정안 추가)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 상기 통보의무를 규정한 목적 중 하나는 조사·수사 대상자 소속 기관 내 징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직무 관련 사건 외 성관련 비위 사건, 스토킹 범죄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대부분의 지방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ii) 이미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기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ii)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수사 개시·종료 통보의무의 범위가 협소하여 징계 누락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소속 임직원의 복무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상기 통보의무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하면서, 추가로 확대 범위를 국가원·지방공무원과 같이 ‘모든 사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3

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2021.7.